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원사요진이 거주자의 동의없이
영장집행 장면을 방송국이 녹화하도록 하였다면,
미연방헌법 수정 4 조에 위배된다
AYENI v. MOTTOLA
22 Med. L. Rptr. 2225(미연방제 2 항소법원, 1994 년 9 월)

사건개요

1. 1992 년 3 월 5 일 피고 Mottola 는 믿을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소위 Babatunde Ayeni 가 신용카드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에 근거하여 Ayeni 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원고 Tawa Ayeni 는 Babatunde Ayeni 의 아내이며, 원고 Kayode Ayeni 는 이들 부부의 아들인데 원고들은 모두 이들 사기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수색영장은 Mottola 와 또 다른 미국정부 관리에게 발부된 것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특정의 신용카드 사기 증거물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2. 오후 6 시 Ayeni 부인과 Kayode 만이 집에 있었는데 6 명의 요원(4 또는 5 명의 비밀요원과 1~2 명의 우편국 수색대원)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들은 조사를 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Mottola 는 처음 요원들이 들이닥칠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아마도 무선으로 이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던 듯하다. Ayeni 부인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한 요원이 그녀의 가슴팍을 밀치고 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동안 다른 두 요원이 문을 열어 젖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 요원들이 침실로 쏟아져 들어가 옷장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하자 Ayeni 부인은 수색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요원 중 한 명이 자신들은 영장을 가지고 올 동료요원들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당시요원들이 수색을 멈추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오후 7 시 50 분 요원들은 무선으로-아마도 피고 Mottola 로부터-방금 수색영장에 서명을 받았다는 통고를 받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3. 약 25 분 후 썸 Mottola 가 영장을 소지하고 도착하였다. 그는 세 명의 특수요원과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세 명의 CBS 텔레비전 「Street Stones」라는 주간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 담당팀원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CBS TV 직원들은 이들 요원들이 Ayeni 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비디오 카메라와 음성녹음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이 장면들을 촬영하였다.

Ayeni 부인은 자신과 아들을 비디오로 찍는 것에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잡지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Kayode 는 울면서 엄마에게 무섭다고 말했다. Ayeni 부인이 아들의 얼굴을 잡지로 가리려고 할때 Mottola 가 그녀의 손에서 잡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원고들에게 「입닥쳐」라고 말했다. Mottola 와 다른 요원 중 한 명이 카메라맨에게 Ayeni 부인의 얼굴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Ayeni 부인은 그 요원에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색 중 찾아낸 여러 개의 값비싼 시계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추궁당하였고 그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계속 녹화 당했다. 카메라맨은 요원들이 집을 수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책, 사진, 재정서류 및 개인적인 편지와 같은 사적인

부분까지도 비디오에 담았다. 수색하는 동안 요원들은 Ayeni 부인 소유의 안락의자 다리와 TV 스탠드를 부숴뜨렸다.

CBS 카메라맨들은 약 20 분간 수색내용을 녹화하고 여러명의 요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남아있는 요원들은 수색을 마치고 9 시 30 분경, 즉 최초로 집안에 들어선 후 세 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집안에서 가지고간 유일한 물품은 Ayeni 가족 사진 1 장 뿐이었다. 그러나 CBS 는 이 비디오의 어떤 부분도 방영하지는 않았다.

4. 원고들은 Mottola 및 다른 요원, 그리고 CBS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Federal Bureau of Narcotics, 403 U.S. 388 에서 유래한 Bivens action 을 말하며 이는 연방정부 관리가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다른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없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역자 주)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CBS 는 원고들과 화해를 하였고, Mottol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직 소장조차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Mottola 만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성급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였고 1 심에서 이 신청사건을 담당한 Weinstein 판사는 면책특권에 근거한 Mottola 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Mottola 는 이 기각결정을 불복하여 본안판결이 나기도 전에 별도의 항고(소위 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한 것이다

판결요지

1. 수사요원이 영장집행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기위하여 TV 방송국 직원을 대동하고 개인의주거에 들어간 것이 당시 집안에 있던 이 사건 원고들 모자가 가지는 미연방헌법 수정 4 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Mottola 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 모자가 촬영에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원이 영장집행 장면을 촬영토록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로서 영장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나아가 수색작업 자체가 매우 과격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수사요원 개인도 원고들 모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3. 미연방헌법 수정 4 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압수에는 물건의 압수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구두진술을 녹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자매체를 이용한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장소에 침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도 역시 미연방헌법 수정 4 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결이유(요약)

1. 원고들의 미연방헌법 수정 4 조 청구(Fourth Amendment Claims) 피고 Mottola 가 내세우는 면책특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색 당시 미연방헌법 수정 4 조가

Mottola 가 CBS TV 취재팀을 Ayeni 의 집안에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Mottola 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확립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Mottola 의 행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 제 4 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2. 즉, 첫째로 Ayeni 가의 프라이버시가 자신의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들로 인하여 침해당했고, 둘째로 수색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도발적이었으며, 셋째로 일부 수색활동은 영장 발부 이전에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A.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무단침입

(1) 미연방헌법 수정 4 조의 의미

Ayeni 집안의 프라이버시가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로 침해당했다는 것은 미연방헌법수정 4 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수정 4 조는 「누구도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압수 · 수색 영장은 특히 수색의 장소와 체포 또는 압수될 사람이나 물건이 특정되고 선서나 확약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발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모든 수색이 합리적일 것(reasonable)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 4 조의 합리성의 요구는 부당한 압수 · 수색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행되는 압수·수색의 방식,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리에 의한 침해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수정 4 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가정이란 프라이버시가 가장 잘 보호되어야 할 곳 중의 하나이며 개인의 거주지의 평온이 일반적으로 수정 4 조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하겠다. 범죄를 다스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택침입의 필요성, 범위, 조건 등은 이러한 수색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가 아니라 이와 무관한 판사가 규정한다. 이처럼 언제 수색의 권한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우선하는지를 경찰관이나 정부요원이 아닌 판사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소위 exclusionary rule)이 연방요원에 대하여는 1914 년에, 주정부관리에 대하여는 1961 년에 확립되어, 법률집행요원은 만약그들의 수색활동이 수정 4 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 왔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법원의 판결은 법률집행요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영장에 명백하게 승인되어있는 행동이나 수색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수색하는동안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법률집행요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영장에서 승인해준 수색활동을 완수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묵시적으로 승인된 추가의 행동들로 제한하고 있다. 수색영장에는 수색이 허용됨을 나타냄과 동시에 압수·수색할 품목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승인된 관리의 성명도 명기되어 있다. Ayeni 집을 수색하도록 허용한 영장은 「Mottola 와 승인 받은 미국 정부관리」에게 발부된 것이다. Mottola 가 자신의 수색영장 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선서진술서에는 「적절한 지원하에 어느 비밀특수요원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크레디트카드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Ayeni 집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어떠한 서류에도 TV 카메라맨의 존재를 요구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녹화, 녹음도 필요하다고 쓰여있지 않다. 따라서 CBS 카메라맨들의 존재가 어떠한 합법적인 법률집행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서 묵시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볼수도 없다.

Mottola 는 수색요원들의 영장집행상황을 살피고 보도하기 위해 보도기관의 구성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는 명백히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수정 4 조를 둔 목적은 법의 집행 행위시에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는 요원들이 집안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는 그 영장에 나타난 명시적 조건에 부합하거나, 또는 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법률집행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Mottola 는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합법적 법률집행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을 Ayeni 의 집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수정 4 조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의 집은 법률집행을 하는 배우를 위한 무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Mottola 가 한 행동이 불합리한 것이었다는 점은 그의 행동이 법률집행의 합법적 필요성에 기초한 정당성을 완전히 결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 4 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가치, 즉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CBS 카메라팀을 Ayeni 의 집안에 데리고 간 목적은 공공방송이 그들의 개인 가옥 안을 촬영하고 보도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사생활 보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Mottola 가 내세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합리성을 지닌 관리라면 TV 팀과 같이 법률집행의 보조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제 3 자를 수색에 참여시키는 것이 수정 4 조의 요구사항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Weinstein 판사의 1 심 판시내용, 즉 (i) 부당한 수색을 금지한 수정제 4 조의 내용은 Mottola 가 CBS 카메라팀을 Ayeni 의 집에 데리고 가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ii) 수정 4 조 하에서, Ayeni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맨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수색 당시 「명백히 확립되어 있었고」, (iii) Mottola 는 자신의 행동이 수정 4 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본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2) 권한이 없는 자의 침입금지-연방법률에 근거함

우리가 Mottola 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미연방헌법 수정제 4 조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의 결정은 헌법을 떠나서도 미연방법률 18 편 3105 조(18 U.S.C. §3105)에 의하여 다시 지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은 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사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수색영장은 수색장에 명시된 관리나, 이러한 수색을 하도록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그 외에 이들 관리의 요청에 의거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데 동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 법령은 수색영장을 「송달」 할 수 있는 사람을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들과 이들을 합법적으로 보조하는 사람들」에 국한하고 있는 바, 이는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도 해석 된다(United States v. Clouston, 623 F. 2d 485,486 6th Cir 1980) 비록 이 법령이 수정 4 조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정 4 조의 합리성(reasonableness)의 기준의 해석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위 법률 3105 조에 비추어 볼 때 수정 4 조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수색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들을 돕는 제 3 자가 수색에 참여하는 것이 수정 4 조의 합리성의 요구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Mottola 는 CBS 취재팀이 수색과정에서 Mottola 나 다른 관리들을 보조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오히려 관리들은 CBS 취재팀이 TV 쇼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위 법률 3105 조를 위반한 것이다.

Mottola 는 Davis v. Schere 사건에 대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자신이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자신이 원고의 헌법상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항하여 가지는 면책특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ottola 의 이 주장은 두가지 점에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첫째, 원고들은 피고가 위 법률 3105 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고 연방헌법 수정 4 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구하는것이며 이 법률은 책임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고는 Davis 사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 Davls 사건에서는 원고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경찰관이 자신의 면허를 사전 또는 사후 청문회 없이 정지시켜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그 당시 같은 사안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상의 권리는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Davis 사건에서 피고인 플로리다 고속도로 경찰관이 적법절차권리와 무관한 법률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Davis 사건에서는 피고가 행한 법률위반이 문제의 핵심인 헌법상 권리침해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 3105 조 위반 이문제의 핵심인 연방헌법 수정 4 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Davls 사건을 원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B. 수색활동의 과격함

원고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Mottola 나 그의 지휘하에 있는 요원들의 수색행동이 지나치게 침입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원고들은 Mottola 가 Ayeni 부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낚아채고 그녀가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잡지로 가리려고 할 때 「입 다물어」라고 말했으며, 요원들은 집안에 있는 가구 몇 개를 부숴뜨리기까지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과 무관한 Ayeni 부인과 아들, 그들의 개인서류들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색이 지나치게 침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CBS 카메라맨들이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 Ayeni 부인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자신과 아들의 얼굴을 가리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또, CBS 팀이 수색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요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옷장서랍, 책상 안을 뒤지는 것을 촬영하고 편지,가족사진, 은행, 금융관계 서류들을 클로즈업해서 찍어냈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계되는 특정의 물건을 수색하는 경우와는 달리 서류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서류들을 훑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류와 관련된 수색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형태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번 경우도 서류 수색이 수색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매우 개인적인 품목들에 대한 검열이 되기 쉽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색의 침입성은 수색 활동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서류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확대된다.

이 사건에서 녹화와 녹음은 신용카드 사기와 관련된 물품을 찾는다는 수색의 본래의 목적달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수색을 녹화한 것이 압수 물품의 위치를 증명한다거나, 수색하는 동안 요원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의에 반박하기 위한 필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방송국 직원들이 Ayeni의 집에 침입한 것은 Ayeni의 집안과 Ayeni 가족의 모습 등을 TV 시청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사건의 1심 법원인 뉴욕 동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이 녹화와 녹음이 수정 4 조하에서 「압수」에 해당하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수색 활동을 침입적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한데에 동의한다. (수정제 4 조의 압수는 만질 수 있는 물체 뿐만 아니라 구두진술의 녹화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침입 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녹화와 같이 전자매체를 통하여 사적인 장소에 침투하는 것도 수정제 4 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가택수색은 사생활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서류를 수색하는 경우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수정제 4 조의 요구사항은 한 마디로 「합리적인 특정성」으로 귀착된다.

Rivera v. U. S. 928 F.2d 592. 사건에서 이 법원은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지나치게 침입적인 수색이나, Tawa와 Kayode의 경우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것은 수색영장에 허용된 수사의 목적과 무관한 것이다. 수색영장에 명기되어 있지도, 수색의 결과로 구속되지도 않은 사람을 추가로 수색하거나 체포하려면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거나, 적어도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면책특권을 받아들여지려면 피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원고들의 수정제 4 조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고 그 믿음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색영장 집행시 사용된 물리적인 힘이 과격한 것이었다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도 그 만큼 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영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재산의 파괴행위는 수정 4 조 위반이다. Mottola가 주장하듯이 집안에 있던 사진이 차후에 원고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색하는 동안 그 사진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는 조치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yeni 부인의 남편은 수색의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의 하수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Ayeni만이 나와 있는 사진 한 장 정도를 신원확인 목적으로 압수하였다면 이는 영장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Mottola 등 수사요원들의 제반파괴적 행동은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C. 영장 발부 전의 침입 및 구금조치

원고들은 그들이 치안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서명하기 2 시간 전부터 불법적으로 억류당하고 그들의 아파트가 수색당했다고 주장한다. Segura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 법원은 다른 동료요원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중임을 알고있는 수사요원이 집안에 들어가 지키거나, 필요한 경우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거주자를 붙들어 두어도, 부당한 「체포」를 금하는 수정제 4 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바깥차고에 있던 관리들은 영장이 집행되기 이전에 차고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영장 없는 수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Segur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색」을 「체포」와 구별하여 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제한된 「수색」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급박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실시된 가택침입과 수색은 수정 4 조 위반이라는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박한 정황이 없는 한 수색영장 발부 이전의 Ayeni 집안 침입 및 수색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Mottola 는 자신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Ayeni 의 집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Ayeni 의 집에 있던 요원들이 외부와 통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색영장에는 Mottola 의 이름만이 쓰여져 있었으므로, Mottola 가 수색활동을 총괄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Mottola 가 다른 요원들이 Ayeni 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간 행동을 계획, 조정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배심원들은 관리들이 다른 동료가 수색영장을 받아오리라고 믿고, 수색을 시작하지는 않은 채 단지 현상유지만을 위해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색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집안이 수색되었는지를 가려내야만 한다. 그리고 집안이 수색되었다면 다시 피고들이 이러한 영장없는 수색을 합리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II. 실체적 적법절차권 주장(Substantive Due Process Claim)

원고가 피고의 행동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미연방헌법 수정 5 조의 실체적 적법절차조항(substantive due process)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raham v. Conno 사건과 Albright v. Oliver 사건 이후 수정 4 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주장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수정 5 조의 실체적 적법절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체포나 구금 등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수정 4 조가 명시적인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매우 일반적인 조항인 수정 5 조의 실체적 적법절차조항을 보호의 근거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의 Albrigh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확인한 바 있다.

III. 결론

따라서 미 연방헌법 수정 4 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내세우는 면책특권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 1 심 법원이 피고가 위 면책특권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를 기각한 결정을 한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원심결정을 유지한다.